

2021년도 문화창작품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

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제주도에서 지원 또는 공모전 등을 통해 발굴된 문화창작품의 인지도 향상 및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「2021년도 문화창작품 홍보마케팅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1. 사업목적

- 문화창작품에 대한 홍보 및 유통 지원을 통해 제주도내 문화콘텐츠 산업화 기반 확대

2.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협약일 ~ 2021년 12월 10일(금)
- 사업대상 :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“문화산업” 관련 창작품의 법적 권리를 가진 제주도내 소재 관련 기업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개인 창작자

<문화산업진흥 기본법>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문화산업"이란 문화상품의 기획·개발·제작·생산·유통·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.
 - 가. 영화·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
 - 나. 음악·게임과 관련된 산업
 - 다. 출판·인쇄·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
 - 라.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
 - 마.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
 - 바. 만화·캐릭터·애니메이션·에듀테인먼트·모바일문화콘텐츠·디자인(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)·광고·공연·미술품·공예품과 관련된 산업
 - 사. 디지털문화콘텐츠,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·가공·개발·제작·생산·저장·검색·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
 - 아. 대중문화예술산업
 - 자.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, 조형물, 장식용품,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
 - 차.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·박람회·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. 다만, 「전시산업발전법」 제2조제2호의 전시회·박람회·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.
 - 카.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

○ 사업내용

구분	개별 홍보마케팅 지원 A						
지원 대상	도내 소재 관련 기업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개인 창작자 (문화산업진흥 기본법 2조 해당)						
지원 규모	1개 내외 업체 또는 개인창작자						
지원 내용 (선택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온/오프라인 홍보 						
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 style="width: 20%; text-align: center;">온라인몰 입점/운영</td> <td>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입점, 등록 및 홍보(V커머스 등)에 필요한 제반비용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온/오프라인 홍보물 제작</td> <td>온/오프라인 홍보에 필요한 홍보영상, 홍보물 제작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SNS 홍보</td> <td>홍보용 SNS 콘텐츠 제작 및 업로드(연재형 웹툰 및 이모티콘 제작 등)</td> </tr> </table>	온라인몰 입점/운영	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입점, 등록 및 홍보(V커머스 등)에 필요한 제반비용	온/오프라인 홍보물 제작	온/오프라인 홍보에 필요한 홍보영상, 홍보물 제작	SNS 홍보	홍보용 SNS 콘텐츠 제작 및 업로드(연재형 웹툰 및 이모티콘 제작 등)
온라인몰 입점/운영	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입점, 등록 및 홍보(V커머스 등)에 필요한 제반비용						
온/오프라인 홍보물 제작	온/오프라인 홍보에 필요한 홍보영상, 홍보물 제작						
SNS 홍보	홍보용 SNS 콘텐츠 제작 및 업로드(연재형 웹툰 및 이모티콘 제작 등)						
(최대 4백만원 상당)							
※ 용역업체 선정 시 수의계약 진행 / ※ 지원사항 외 참가기업 자부담							
지원 조건	<p>국내·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문화창작품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진 사업자 및 개인 창작자</p> <p>※ 국내외 매출계약서, 수출실적증명서 제출 시 우대</p>			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선정대상자(기업 및 개인창작자)가 선지출 후 승인에 따라 지원(후지원) •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원함 • 사업계획 제출 시 기 발굴 문화창작품의 관련 실적 및 증빙 첨부 • 지원 후 결과보고서 및 성과활용계획을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향후 사업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						
지원 제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비 산출에 있어 그 근거가 원가계산서 또는 견적서가 아닌 경우 •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• 공고일 기준으로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 • 신청일 현재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• 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되어 있는 경우 						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출계약서: 해당 작품, 권리, 기간, 계약금액, 제공사항 등 수출 계약 내용과 서명이 완료되어야 함 • 본 과제 신청과 관련된 기타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함 • 선정 평가 기준 미달 시 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• 수행기업(개인) 선정 후 사업수행 내용, 구성, 규모, 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음 						

3. 평가방법

○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

선정방법	선정기준
서면평가 (A유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평가위원회(5인 이내)를 구성하여 평가위원 위촉 후 평가 진행 ○ 선정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- 평가 진행 중 평가위원회가 별도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
○ 평가항목 및 배점

평가항목	평가주안점	배점
창작품의 우수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창작품의 우수성, 잠재성 ○ 창작품 활용현황 등 ○ 국내/외 수상이력, 시청률, 매출 등 성과 	25점
사업 수행 계획의 구체성/타당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계획의 구체성, 내용의 타당성, 추진일정의 명확성, 현실성 등 ○ 예산항목의 합리성 및 적절성 ○ 예산대비 결과물(활동)의 적정성(양적, 질적) 	25점
국내외 마케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타깃층이 명확하며, 구체적 전략 제시 ○ 국내외 시장 진출 역량 보유 현황 	25점
결과물 활용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결과물에 대한 활용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○ 목표시장에서의 예상 성과를 제시 	25점
합계		100점

4. 신청접수

- 공고기간 : 2021년 10월 12일(화) ~ 2021년 10월 21일(목)
- 접수기간 : 2021년 10월 18일(월) ~ 2021년 10월 21일(목), 17:00까지
- 접수방법 : 이메일 제출(saybin369@ofjeju.kr)
 -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(<http://www.ofjeju.kr>)에서 구비서류와 관련 서식을 다운 받아 지정된 양식 및 요령에 따라 작성(※ 붙임자료 참조)
 - 제출서류는 아래 표의 순서대로 정렬하고 반드시 서명한 후 하나의 PDF파일로 변환하여 담당자의 e-mail주소로 제출하여야 하며, 마감 이후 수정 및 보완 불가.
(파일명: 회사(창작자)명_과제명.pdf, 누락된 서류가 없도록 주의할 것)
- 접수처 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산로 82 2층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
문화산업팀 오호건 주임
☎ Tel : 064) 735-0617 / ✉ E-mail : saybin369@ofjeju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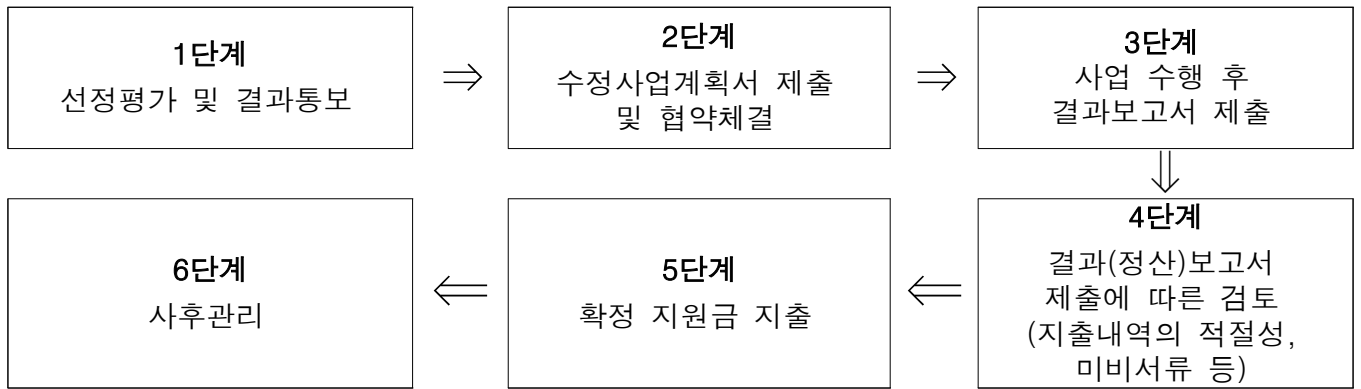
○ 제출서류

No	제출서류	제출부수	비고
1	신청서 및 과제계획서	원본 1부	○ [서식] 다운로드 후 붙임1, 붙임2 작성
2	사업 참여 서약서	1부	○ [서식] 다운로드 후 붙임3 작성
3	개인정보이용동의서	1부	○ [서식] 다운로드 후 붙임4 작성
4	평가위원 추천표	1부	○ [서식] 다운로드 후 붙임5 작성
5	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	1부	○ 법인의 경우: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제출 ○ 개인사업자의 경우: 사업자등록증 1부 제출
6	국세, 지방세 완납 증명서	원본 각 1부	○ 각 1부 제출
7	최근 2년간 재무제표	각 1부	○ 최근 2년간 재무제표(2018~2019년도) ※ 개인 사업자, 단체의 경우 재무제표가 없을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, 종합소득세신고서 1부
8	기타 추가 자료	각 1부	○ 주요 계약서(저작권, 배급, 방송편성, 납품서 등) ○ 신청서 및 참여인력 실적 ○ 문화창작품 참고 자료(이미지, 파일, 인쇄물 등) ○ 기타 창작자/기업의 보유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 (인증서 등)

- ※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신청 기업(창작자)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, 추가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된 자료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
- ※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 일체는 신청 기업(창작자) 부담

5. 정산 및 지원절차

○ 지원금 신청절차



- ※ 협약체결 이후 집행된 지출에 한해서 인정
- ※ 최종지원금은 원 단위 이하 절사 후 지급

○ 정산내역 증빙자료 : 세부내용은 [붙임6] 참조

카드지출	카드매출전표
계좌이체	계좌이체 확인증 외 다음을 첨부 - 법인 또는 업체와의 거래 시 세금계산서, 통장사본 - 개인과의 거래 시 원천징수영수증(소득신고 必), 신분증, 통장사본

6. 기타사항

○ 지원조건

- 제주특별자치도,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 사실 및 로고를 명기
-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최(관)하는 국내외 행사 및 홍보에 활용

○ 참여제한

- 신청일 기준 국세·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거나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사업에 선정된 후 이행이 되지 않아 취소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(개인)는 참여불가
- 신청일 기준 중앙정부나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참여불가
- 신청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

※ 위 사항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접수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※ 사업내용 및 지원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사업요강 및접수요령 미숙지에 따른 지원취소 등의 책임은 일체 접수자에게 있음

2021년 10월 12일
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원장